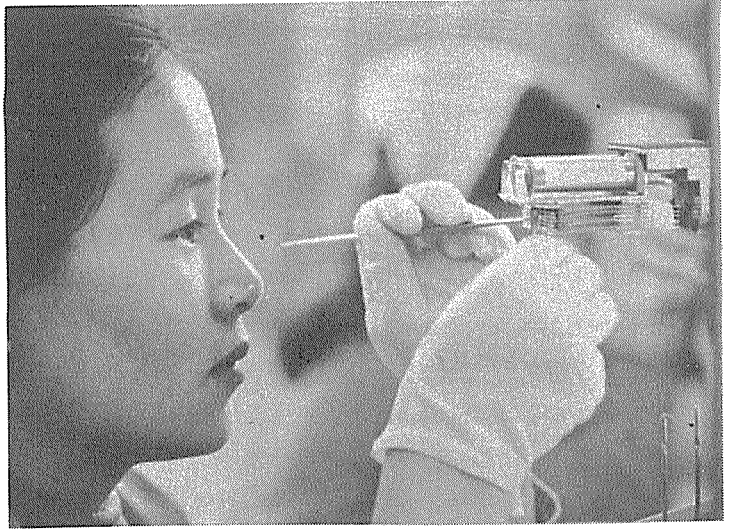


으로는 半導體, 컴퓨터 및 電子式 通信機器를 중심으로 電子産業을 育成키 위한 支援策을 立法, 資金, 稅制 및 行政面에 걸쳐 推進할 수 있는 근거가 될 法規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 戰略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電子産業이 勞動集約型내지 技能人力依存 一변도의 발전 방식에서 技術 및 資本集約型的의 高度化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단계에서 韓國은 他競爭國보다 技術 및 資本面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의 발전 여부는 先進諸國과 競爭 가능한 여건을 여하한 방향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向后的 課題

이번의 改正으로 향후 국내



電子産業 育成을 위한 골격은 마련되었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실행을 위한 제반 후속조치, 즉

○각종 施行規程 및 政策立案案이 필요하며,

○政府 및 關係機關의 탄력적인 制度의 운용이 필요한 동시에,

○育成 대상에 되는 電子産業界의 合理的 經營이 요구되고 있다. 政府와 業界가 이러한 공동 관심사들 앞으로 얼마나 時宜適切하고 現實性 있게 다루는가에 이번 改正의 成敗가 달려 있으며, 나아가서는 1980年代 국내 電子産業의 수준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 特 輯

# 電子業界 모두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金 聖 俊

三星電子工業(株) 企劃調査室 部長

우리나라 전자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는 電子工業振興法이 지난 69년 1월 22일 처음 제정된 이후 실로 12년 만인 지난 4월 13일에 改正 公布되어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 확대에 따라 전자공업의 構造 高度化가 불가피하며 특히 半導體, 컴퓨터 등 핵심 技術 部門의 개발이 진요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支援制度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공업 육성을 뒷받침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본다.

실상 우리는 現行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서, 전자진흥 기본계획, 실시 계획이 不備했다는 것과 육성자금 조성의 실적 부진, 그리고 電子工業審議會 활동의 저조로 말미암은 장기 육성정책 미흡, 나아가서는 전자계산기, 반도체 등 戰略品目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전산업 高能率化의 中核으로 부각되어지는 컴퓨터 部門을 電子機器事業 범위에 포함시켰고(第2條), 전자공업 고도화계획의 실질적인 추진력이 되는 財源 확보를 위하여 電子

工業振興基金을 별도 설치 운영케 되었으며(第6條), 주무부 장관이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시설의 적정화 및 부품의 규격화 등 전자공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함(第10條)으로써 차 專門化, 共同事業化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케 된 것은 지속적 성장 기반의 조성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특히 중전의 획일적인 지원 계획을 탈피하여 「품목별 개발 단계에 따른 고도화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研究開發事業을 통한 생산기술 개발 품목(例: 録画 가능한 VDP), 工業化事業을 통한 생산능력의 향상 품목(例: VTR), 合理化事業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품목(例: CTV) 등으로 3大別하여 자기 특성에 맞는 長期 育成政策 방향을 마련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최대 특징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고도화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韓國電子工業振興會를 특수 법인으로 발전 강화시킨 것은 장차 民間 차원에서의 진흥정책을 보다 現場感있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振興會의 역할이 또한 크게 기대된다 하겠다.

둘이켜 보건대 우리나라 전자공업이 重化學 계열의 戰略 特化産業으로 육성되어 오면서, 輸出 主導 산업으로 각광을 받

게 되었다든지 과감한 外資 誘致에 의한 量的 성장을 이룩한 점, 본체도에 오를 수 있는 기초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으나, 반면에 생산구조의 불균형, 지원정책의 부족, 관련업종(전자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밀기계공업, 표면처리공업, 금형공업)의 總和的인 성장 환경이 미비했다는 것 등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부인 못할 상황이었다.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강, 조선, 전자, 기계, 석유화학, 비철금속의 80년대 6대 중추 基幹産業 가운데서도 수출 및 연관 효과면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기술의 자주적인 연구개발이다. 이른바 70년대를 導入技術의 흡수, 소화시대라고 한다면 自主技術이야말로 80년대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고, 이제야말로 성장환경을 재정비하여 質的 高度化에 임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진대 이번 振興法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対策 條項이 만족할 만큼 명문화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전자산업 육성 체제를 재정비해 나가자면 導入期·成長期·衰退期에 있는 산업화 단계별 육성 품목을 그 특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施策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稅

制·金融·각종 行政支援의 연결을 통한 지원효과의 集中·極大化가 더욱 重要하다 하겠다.

물론 전자기기 등의 國産化 촉진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매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 수입에 있어서 미리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가급적 國産機資材를 쓰도록 함(第7條)으로써 行政部門 需要의 적극 개발을 시도한 것은 꼭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면, 이를테면 特消稅率 인하로써 內需 기반을 확충하여 그로부터의 소득을 先端技術 革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半導體·컴퓨터·통신기 등 3大 戰畵 부문에 대한 무역및 관세정책의 彈力化로써 部品素材의 자급화를 도모한다든가, 試作品에 대한 보조금, 기술 확보를 위한 이니셜 케이먼트의 금융지원, 런닝 로얄티에 대한 정부의 간접용자, 일부 특수품목에 대한 기술도입의 완전自由化 등등 우리 전자공업의 장기 발전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산적해 있다.

일반적인 法體系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電子工業振興法은 선언적, 교시적, 예방적인데 그치고 실제상의 치료적, 현행조치적인 사항은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예산회계법·기술용역육성법·외자



도입법 등 주변의 관련 個別法안에 끌고루 반영되어야 하는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법규가 과연 전자산업 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리이러한 분야는 별도로 促進 혹은 減免한다고 빠짐없이 규정화시키자면, 이 역시 어느 법에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비근한 예로 發明特許品の 신규생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減免이나 동제품에 대한 일정기간의 特別消費稅를 非課稅되도록 하자면 우리 전자진흥법상에 이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선언적인 가능 條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改正法을 기본으로 한 대통령령(施行令)과 상공부령(施行規則)이 다듬어지고 審議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는 그러한 전자산업계의

연원을 심분 반영하여, 기왕 세계 제10위권의 선두주자로 浮上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더욱 북돋아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기를 부탁한다.

아울러 과거의 모든 法規定에서도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적인 장치 못지않게 실제 법 조항 운영상의 문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앞으로 진흥회가 權限을 위임받아 시행하든 감독관서에서 직접 시행하든간에 여기에는 有關 部處들과 잘 조화를 해서 명실상부한 전자공업의 체질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웅대한 계획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會員社 즉 電子電氣事業을 하는 모든 업체가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진흥법의 의도하는 바대로 民間主導, 自律 成長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 데에 여간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戰后 일본이 家電 분야를 강하게 지향하고 가전제품에서부터 深化시켜 나가 電子工業 尖端技術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왔듯이, 우리의 電子産業 구조의 고도화는 장기안목에서의 자율 성장을 시도하면서 또한 국가 이익과 일치될 수 있도록 核心戰略 부문으로 구심점을 가다듬어 가는 분위기가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외 기술도입 일변도의 안이성이나 정부기관 주도의 연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소 부족한 研究開發 투자 규모일망정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건전한 競爭 원리에 입각한 개개 기업의 비즈니스 의욕에 직결시켜 나가는 總力技術 개발 체제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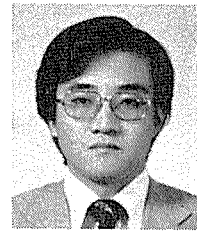
야흐로 강력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제 우리 전자업계인들은 이번 電子工業振興法の 개정을 계기로 삼아 先導産業의 긍지와 책임을 되살려 이 소망스러운 高度化 발전에 기필코 실현되게끔 새로운 각오로써 임해야 될 줄로 안다.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特 輯

# 一貫性있고 体系的인 支援 育成



李 東 鎬

東洋나이론(株) 電子事業部 企劃課長

1970年 초기에 우리나라 電子工業振興法이 制定되고 電子工業政策이 본격화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電子工業의 年 평균 成長率이 46.5%(製造系 평균 18.5%), 年 평균 輸出 증가율이 59.5%(重化學工業 製品 輸出 中 2位, 1980年 輸出 額 20億弗로 전체의 11.4%)로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商品 구조상으로 볼 때 家庭用 및 部品 위주였으며 附加價值가 높

고 고액의 技術開發이 필요한 産業用機器(컴퓨터 등)와 半導體 部品 분야가 매우 脆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先進諸國은 컴퓨터, 半導體 등 주요 電子技術 部品の 最新 技術과 部品の 供給을 기피하는 등 技術武器化 傾向이 있는바 이들은 電子工業의 核心技術로서 극히 중요하며 막대한 開發費用이 소요되므로 民間企業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國家事業(National Project)化 制度를 도입하여 國家的인 차원에서 育成하지 않으면 先進工業國을 뒤따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國內의으로는 經濟 및 社會的 與件의 變化로 현재와 같이 勞動集約의 부문(家庭用 및 部品)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보다 技術集約의이고 附加價值가 높은 産業用機器 중심으로서 生産 구조의 高度化가